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5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5.

발 의 자 : 서영석 · 김남희 · 소병훈
윤준병 · 윤종균 · 박희승
허종식 · 황명선 · 서미화
남인순 · 박홍배 · 김재원
김 윤 · 최혁진 · 이해식
정일영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, 2024년 집계된 전체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건수는 총 49,624건으로 나타남.

또한,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면 아동등의 지문 등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2025년도 기준 사전등록률은 미진한 실정임.

이에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).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지문등정보의 범위,”를 “지문등정보의 범위와”로, “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”을 “등록 방법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”으로,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- ② 경찰청장은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과 등록 방법·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(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)	제7조의2(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<u>경찰청장은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과 등록 방법·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.</u>
②·③ (생 략)	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④ 제1항에 따른 <u>지문등정보의 범위,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</u> 정하고, <u>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</u> 파기 방법과 절차 및 <u>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</u>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⑤ ----- <u>지문등정보의 범위와</u> ----- -- <u>등록 방법·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</u> ----- <u>제3항</u> ----- ----- <u>제4항</u> ----- ----- -----.